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03,102,872	75,093,086
일반회계	2,280,409,031	68,412,271
특별회계	222,693,841	6,680,815
공기업특별회계	181,934,832	5,458,0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395,672	2,591,8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539,160	2,866,175
기타특별회계	40,759,009	1,222,770
주택사업특별회계	97,244	2,9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197,583	395,927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80,592	134,418
교통사업특별회계	20,833,431	625,003
대지보상특별회계	30,000	900
수질개선특별회계	1,340,559	40,2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00,6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